

제272회 임시회
도시계획관리위원회

집단에너지공급사업 업무 위·수탁 협약 해지에 따른

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(안) 보고

2017. 2. .

 서울주택도시공사

집단에너지공급사업 업무 위·수탁 협약 해지에 따른
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(안) 보고

I 개정의 필요성

- 서울시의 「서울에너지공사」 설립(2016.12.21.)에 따른 조직 및 정원 관련 규정 정비
 - 서울시와 체결한 「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업무 위·수탁 협약」 해지로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 및 정원의 운영 이유 소멸

II 주요 내용

- 서울주택도시공사 정원(781명)과 별도로 임원에 준하는 사업단장을 둘 수 있도록 한 규정 개정

III 정관 개정(안)

- 서울주택도시공사정관 제22조(조직 및 정원)제5항 삭제

현 행	개 정
제22조(조직 및 정원) ① ~ ④ 생략 ⑤공사는 서울특별시와 공사간 업무 위탁 협약에 따라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집단 에너지 공급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위탁협약기간중 별표2 정원표 외에 공사의 임원에 준하는 사업단장을 둔다.	제22조(조직 및 정원) ① ~ ④ 현행과 같음 (삭제) 부칙(2017. . .)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붙임)

정관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제22조(조직 및 정원)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공사는 서울특별시와 공사간 업무위탁 협약에 따라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집 단 에너지 공급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위탁협약기간중 별표2 정원포외에 공 사의 임원에 준하는 사업단장을 둔다.	제22조(조직 및 정원) ① 현행과 같 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(삭 제)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color: red;">부 칙(2017. .)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

○ 서울주택도시공사정관 제 호

서울주택도시공사정관 중 개정안

서울주택도시공사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22조 (조직 및 정원) ① 공사에 사장, 감사, 6본부를 두며, 기구표는 별표1과 같다.
 ②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의 정원은 별표2와 같다. 단, 임대주택관리 등에 소요되는 인
 력에 대하여 별표2의 정원과 별도로 정수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.
 ③ 공사는 특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별표2의 정원내에서 한시조직을 둘 수 있으며,
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.
 ④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에 의한다.
 ⑤ **삭 제**

부칙(2017. .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